

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8년도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비 용	차 변	대 변	수 익	손실
17,585,409천원	순이익	0천원	11,042,688천원	6,542,721천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
자 산	부 채
224,912,490천원	117,471,963천원
	자 본
	107,440,527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2,810,621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7,377,167)천원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,831,061천원
IV. 현금의 증감(I + II + III)	(2,735,485)천원
V. 기초의 현금	9,371,482천원
VI. 기말의 현금	6,635,997천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부 과 전 수 : 18,544전

나. 연간총하수발생량 : 13,027천 m³

다. 1일평균하수발생량 : 35.6천m³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20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결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1,794,291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8,34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9,496,915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	분	종	류	명	칭	수	량	단	위
				해	당				액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7. 12. .

영 주 시 장